의안번호	5118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의 원	김창연 의원 외 12 명
발의연월일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창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18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9월 18일
발 의 의 원 : 김창연,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명숙, 김현미,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2026.4.28.)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전문위원, 간사, 회의록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종전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및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등(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지정문화유산, 시자연유산, 시무형유산,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그 말소에 관한 사항
3.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시지정문화유산, 시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6. 시지정문화유산, 시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시지정문화유산, 시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 반출·반입에 관한 사항

8. 시지정문화유산, 시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9. 시지정문화유산, 시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위한 자문 및 등재유산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국가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 경영, 고고학, 관광, 국문학사, 도시계획, 동식물학, 미술사, 민속학, 박물관, 법학, 보존과학, 사회학, 언론, 역사학, 인류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조경, 종교, 지구과학, 지질학 또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과위원회의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조사 또는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

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나.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에 관한 사항

라. 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가.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중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나.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을 제외한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 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3. 자연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분과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시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⑧ 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⑨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으로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제2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4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회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①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자료수집·조사·연구·자문 등을 실시하거나 위원회등에 출석한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연구·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위원회(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전문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이하 “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이하 “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이하 “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유산위원회”로 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천연기념물・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본조신설 2026. 4. 28.]